

7월 세무일지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 (월) | 원천징수세액신고 납부기간 |
| |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|
| | 종업원할 사업소세, 증권거래세신고 납부기한 |
| 18 (화) |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|
| |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(중소기업) |
| 18 (화) |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|
| 31 (월) |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기한 |
| |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(일반법인) |
| | 주택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(7. 16 ~) |
| | 주세(교육세포함) 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|
| |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납부기한(7. 1 ~ 7. 31) |

♣ 세금을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?

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"납부기한"이라고 합니다.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▶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

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,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.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의 율(년 10.95%)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%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.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%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.

▶ 행정규제

☞ 허가사업의 제한

허가·인가·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☞ 출국규제

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합니다.

☞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자료를 제공하며,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,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
-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

☞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

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